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2. 24 선고 2019가단57029 판결 [계약금 등 청구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17 선고 2021나307677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2. 24 선고 2019가단57029 판결

전문

원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

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

1. C
2. D
3. E
4. F

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

변론 종결 2020. 11. 25

판결 선고 2021. 2. 24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C는 11,733,330원, 피고 D, E, F은 각 7,822,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- 가. 원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, 망 라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경북 예천 군 G 전 2,585㎡(이하 'G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며, 피고 C는 망인의 처인 자 경북 예천군 H 전 691㎡(이하 'H 토지'라 한다) 및 I 답 1,408㎡(이하 'I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- 나. 원고와 망인은 2018. 4. 8. 원고가 I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총 계약금액 1억 7,600만 원 중 계약금 3,52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증 수령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.
- 다. 원고는 2018. 5. 8. C와 I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데, 총 계약금액 1억 7,600만 원 중 계약금 1,760만 원은 공사 착공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.
- 라. 원고는 2019. 1. 14.경 경북 예천군으로부터 G, I 토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.
- 마.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. 5. 3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처인 피고 C와 망인의 자녀들인

피고 D, E, F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3, 5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계약은 본래 H, G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내용의 것이었고 갑제2호증 계약서의 공사장소란에 기재된 'I 토지'는 오기이다.

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G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I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,이에 따라 원고가 G, I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계약서 공사장소란의 'I' 중 T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'H, G'가 가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,위와 같이 수정된 부분에 원고와 망인의 날 인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,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는 을 제2호증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수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바, 원고가 갑 제2호증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.

갑 제2호증 계약서 공사장소란의 'I'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,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시공되어야 하는 장소는 그 본래 기재에 따라 I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I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원고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G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고 I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일치하지 아니한다.

원고와 망인 사이에 G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고 I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

2018. 5. 8. 체결 된 별도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 이 사건 계약을 대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,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내지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문헌정